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35조(안전운항 등을 위한 조치)에 따라 낚시 어선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낚시어선업자·선원 및 낚시어선 승객의 준수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 6. 2.

안 산 시 장

낚시어선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낚시어선업자·선원 및 낚시어선 승객의 준수사항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제2항에 따라 낚시어선의 안전운항, 승객의 안전사고 예방, 수질 오염의 방지 및 수산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낚시어선업자·선원 및 낚시어선 승객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법 제25조에 따라 낚시어선업을 신고한 자와 선원 및 낚시어선 승객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영업시간)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낚시어선(이하 “낚시어선”이라 한다)의 영업시간은 일출부터 일몰 후 30분까지로 한다.

제4조(운항횟수)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낚시어선에 승객을 승선시켜 낚시 장소에 안내하는 행위를 1일 2회 초과 하여서는 아니되며, 1회차 낚시승객을 낚시장소에 안내하여 낚시승객이 낚시장소에 있을 경우 2회차 승객과 1회차 승객의 합은 승선정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조(영업구역) ① 낚시어선업의 영업구역은 경기도지사와 인천광역시장의 관할수역을 공동영업구역으로 한다.

② 낚시어선업자는 해상교통 안전 확보 및 원활한 항만운영과 낚시어선 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해역에서 낚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해사안전법, 항만법, 개항질서법, 선박안전조업규칙, 어선안전조업규정 등에 의한 제한 및 통제구역의 해역
2. 해주서(영흥도와 선재도 사이), 제부도 매바위, 대부남동 고랫부리, 선감도 누에섬 부근, 낚시어선 영업구역 내의 무인도와 갯바위 및 간출암

③ 낚시어선업자는 낚시어선의 승객을 도서에 안내하는 경우 승객이 낚시 장소에서 야영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영업거리)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낚시어선에 승객을 승선시켜 선상낚시 영업을 하는 경우 육지(계류항)에서 50마일 이내 수역에서 하여야 한다(단, 영업구역 출입항 신고소와 교신가능거리 이내).

제7조(안전운항 등 준수사항) ① 낚시어선업자와 선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인명의 안전에 관한 설비기준을 갖추고 안전운항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정원초과승선을 금지하여야 하고 낚시어선 승선정원 및 승객준수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3. 안전운항을 위하여 낚시승객 전원에게 구명동의를 착용시켜야 한다.
4. 낚시장소에 승객을 안내한 때에는 승객과 상호 연락체계를 유지(낚시어선업자, 선원 및 승객의 휴대전화번호 등을 기록하여 교환하는 것을

말한다)하고 기상악화 등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낚시어선 승객을 안전하게 대피시켜야 한다.

5. 낚시어선 승객이 안전대피조치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인근 해양경비안전서, 경찰서, 군부대, 소방서 등에 대피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6. 수질오염방지를 위하여 유류·분뇨·폐기물 등을 해상투기하면 안되며, 낚시어선 승객으로 인하여 발생된 쓰레기 등을 수거하기 위한 수거함 등을 선내에 비치하여야 한다.
7. 호우, 대설, 폭풍해일, 지진해일, 태풍, 강풍, 풍랑, 안개 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표된 경우와 안개 등으로 인하여 해상에서의 시계(視界)가 1킬로미터 이내인 경우, 그 밖에 출입항 신고 기관의 장이 해상 상황의 급작스런 악화 등으로 인하여 낚시어선의 출항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출항하지 말아야 한다.
8. 낚시어선업자는 술에 취한 상태,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또는 환각물질 등의 약물복용 상태에서는 낚시어선을 조종하여서는 아니된다.
9. 항해 중에는 VHF 등 무선설비 및 V-pass 등 위치발신장치를 정상 작동시켜야 한다.
10. 승선하려는 승객에게 신분증을 요구하여 승선자 명부의 기재내용과 본인 일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1. 승객이 정당한 사유없이 신분증 제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승선을 거부하여야 한다.

② 낚시어선 승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정원을 초과하여 승선을 요구하는 행위
2.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의 구명동의 착용 요청에 대한 불응 및 기타 안전운항을 위한 주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3. 낚시 중에 발생한 쓰레기를 해상에 투기하는 행위
 4. 수산자원보호를 위하여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수산자원의 포획·채취가 금지되는 기간·구역 및 수심과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 체장 또는 체중에 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5. 낚시장소에서 낚시행위 중 기상 악화 등 위험상황이 발생할 경우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6. 제3조에 따른 영업시간 외 항행 및 제5조에 따른 영업구역이 아닌 수역에 안내를 요구하는 행위
 7. 낚시어선 승객은 선내에서 술을 마시고 기타 안전운항 등에 방해되는 행위
 8. 승선자 명부 작성을 위한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의 신분증 제시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행위
- ③ 낚시어선업자, 선원 및 낚시어선 승객은 인천광역시 또는 다른 시 관할 수역에서 영업 및 낚시를 하는 경우 해당수역 관할 시장이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35조에 따라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사고발생의 보고)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은 낚시어선 승객의 사망, 실종사고 및 낚시어선의 충돌·좌초 등 안전운항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우리 시 및 해양경비안전서장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이 고시의 시행 전 낚시어선업법에 따른 낚시

어선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낚시어선업자 및 낚시어선 승객의 준수사항 고시(안산시 고시 제2013-4호)는 폐지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재검토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9년 3월 19일까지로 한다.